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 문장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요금제기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수입증지의 종류는 기본 12종으로 하되 요금제기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하고, 증지의 모양에 균을 상징하는 도안(균 심벌마크)를 추가함.(안 제7조 및 별표 1)

다. 직원복지회가 증지판매 계약을 하고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 위치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5항).

라. 증지판매소는 민원봉사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을 도모함(안 제13조).

마.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을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 납입기한

- 금고 소재지 : 증지를 판매한 다음 날까지

- 금고 소재지 외의 곳 : 5일 내

○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 납입기한

- 전자지불대행업체로부터 해당 대금을 정산받는 날의 다음 날까지

바. 증지는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나 요금계기에 따라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9조 단서).

사. 그 밖에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9. 3. 6. ~ 2009. 3. 2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수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한다.

**제5조(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고유번호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다만, 계기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및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③ 계기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9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거창군공무원후생시설운영위원회, 거창군청상조회 등 직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직원복지회”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하면 계약할 수 있다.

④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1조(판매인의 업무)**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인이 제10조에 따른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봉사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증지 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액판매) 증지는 액면가격으로 판매한다.

제16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금고 소재지의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은 전자지불대행업체로부터 해당 대금을 정산받는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 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의 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증지의 소인)** ① 증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에 따라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소인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1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으면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별지 제3호서식의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교환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자치 단체의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 청구를 받았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6조의 수수료를 제외한 할인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3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지수불부를 비치하여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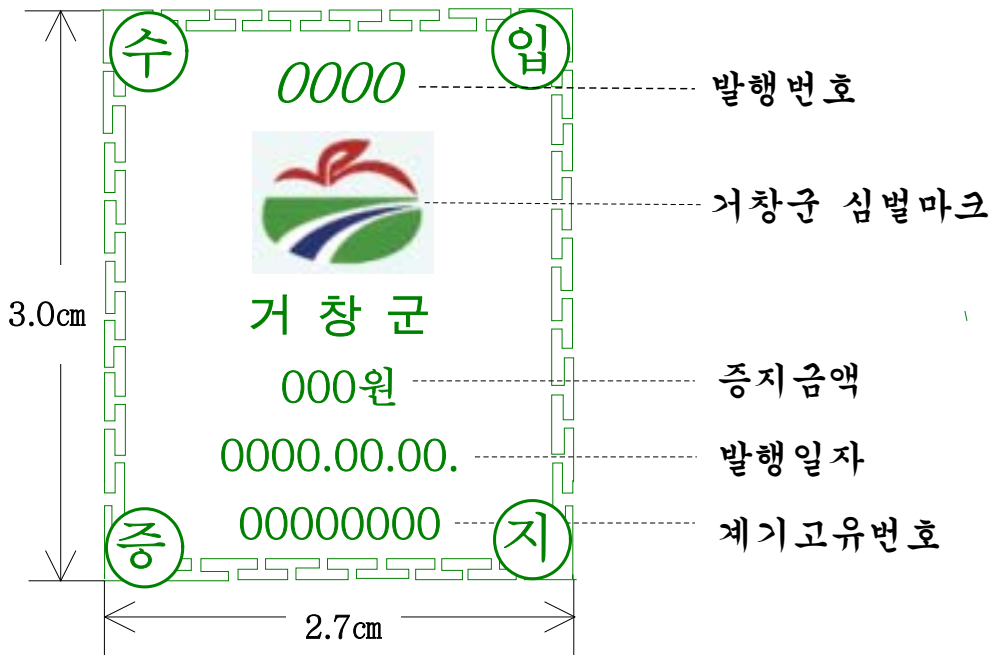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증지 및 판매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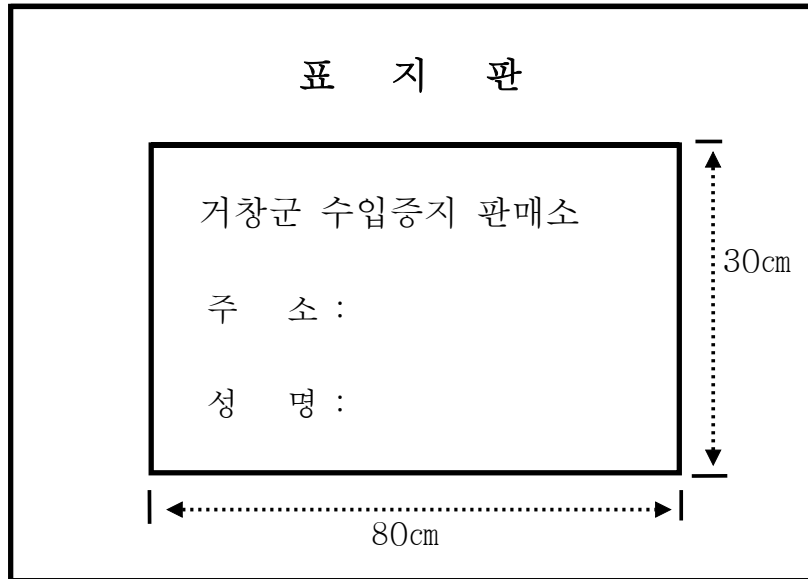
계기 인영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7조 관련)



※ 인영 색상 : 녹색

[별표 2]

표 지 판(제11조 관련)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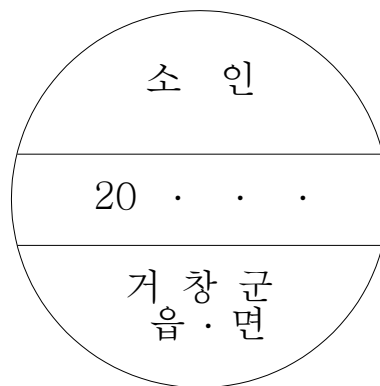
소인인 규격(제19조 관련)

(지름 2.5cm)

(군)



(읍·면)



[별지 제1호서식]

## 수입증지 판매계약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거창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m)

2. 직 업 :

3. 첨부서류 :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환매) 청구서

구분 권종별	재고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환매)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수입증지 불출(교환·환매)증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관 리 인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일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 행 연 월 일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관 리 인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일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 . . .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                     </div>		

[별지 제4호서식]

##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대장

총괄

년 월 일

번호	금일까지 누계	전일까지 누계	금일결손		금일발행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금일발행 내역

1. ○ ○ 원 × ○ ○ 매 = ○ ○ 원
  2. ○ ○ 원 × ○ ○ 매 = ○ ○ 원
  3. ○ ○ 원 × ○ ○ 매 = ○ ○ 원
  4. ○ ○ 원 × ○ ○ 매 = ○ ○ 원
  5. ○ ○ 원 × ○ ○ 매 = ○ ○ 원
- 계 ○ ○ 원정

결손사유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이 경우 수입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이 경우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귀속됩니다.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②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9.1.29>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4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개정 1999.1.29>)** ① 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관외에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② 판매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③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①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소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판매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국가가 판매인에게 매도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한다.

**제7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② 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제9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9]

**제9조의2** 삭제 <1999.1.29>

**제10조** 삭제 <1999.1.29>

## □ 「수입인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발행부에 기재된 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입인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①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1. 체신관서에 대한 공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② 삭제<1999.5.10>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여건 및 납부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2004.7.13]

**제5조 삭제<1999.5.10>**

**제6조(금융기관)** 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11.28, 2004.7.13>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6. 삭제<2000.11.28>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9.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1999.5.10]

**제7조(판매인의 요건)**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0]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7.21>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거나 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4. 공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7. 공무원이 집달관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수료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6.8, 1999.5.10>

② 판매인이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하도록 이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③ 금융기관·채신관서 또는 판매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에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1993.6.8, 1999.5.10>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6.8>

- 1.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의 관리에 소요된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 2.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로 한다.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판매할인율)** 공급기관이 판매인에게 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3.6.8]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을 계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이하 "수입인지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6.8, 1994.12.23, 1999.5.10>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6.8, 1999.5.10>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6.8, 1994.12.23, 1999.5.10, 2008.2.29>

**제14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매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1. 수입인지수급 및 판매명세서
2. 수입인지대금납입명세서
3.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현황
4. 수입인지출납·보관자현황일람표

[전문개정 1993.6.8]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0.11.28>

④ 삭제<1993.6.8>

**제16조(수입인지출납·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 출납보관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본조신설 1999.5.10]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개정 2004.10.8>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0.8]

**제4조(판매기관의 게시사항)** 수입인지판매기관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인지판매인의 의무)** 수입인지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비치할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수입인지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수입인지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2일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2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